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5
----------	-------

발의연월일 : 2026. 7. 28.

발 의 자 : 서삼석 · 윤준병 · 문금주
김원이 · 차지호 · 조인철
박용갑 · 이춘석 · 김성범
조계원 · 허 영 · 이용선
정준호 · 김영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병원의 개설 · 운영 및 수의사의 자격과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실 · 유기동물, 봉사동물 및 취약계층이 사육하는 반려동물 등 공익적 목적의 동물진료를 수행하는 동물병원의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면서 유실 · 유기동물의 보호, 봉사동물의 건강관리 등 공익적 목적의 동물진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익적 진료는 일반 진료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민간 동물병원의 자발적인 참여만으로는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적 지원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익적 동물진료를 수행하는 동물병원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동물병원의 운영 및 시설·장비 확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에 대해서는 공익형 수가를 도입함으로써 공공동물의료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부터 제17조의8까지 신설, 제21조 및 제36조).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6부터 제17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6(공공동물병원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동물진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추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동물병원 중에서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1.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실·유기동물의 진료(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원
2. 「동물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봉사동물의 진료 지원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 지원

② 공공동물병원은 양질의 동물진료서비스 제공과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의 동물진료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공동물병원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동물병원 지정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7(공공동물병원의 지정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공공동물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3. 제1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의6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공공동물병원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동물병원에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7조의8(공익형 수가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이 사육하는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익적 목적의 동물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이하 “공익형 수가제”라 한다)를 정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익형 수가제를 적용하여 동물을 진료한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형 수가제를 적용하여 동물을 진료한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공익형 수가제에 대한 현황조사·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익형 수가제의 산출 방법·적용 범위·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623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공공동물병원의 지정취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7조의6(공공동물병원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동물진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추 능력 있다고 인정하는 동물병원 중에서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u> <u>1.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실·유기동물의 진료(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원</u> <u>2. 「동물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봉사동물의 진료 지원</u> <u>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 지원</u> <u>② 공공동물병원은 양질의 동</u>

<신 설>

물진료서비스 제공과 관련 인
력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의 동
물진료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
립·시행하고 그 시행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공동물병원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
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동물병원
지정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7(공공동물병원의 지정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공동물병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
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3. 제1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의6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공공동물병원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동물병원에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7조의8(공익형 수가제) ① 농

<신 설>

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사육하는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익적 목적의 동물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이하 “공익형 수가제”라 한다)를 정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익형 수가를 적용하여 동물을 진료한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형 수가를 적용하여 동물을 진료한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공익형 수가에 대한 현황조사·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익형 수가의 산출 방법·적용범위·절차 및 그 밖에

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생략) <u><신설></u> 2.·3. (생략)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u> <u>공공동물병원의 지정취소</u> 2.·3. (현행과 같음)
--	--